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양문석 · 진선미 · 박수현
서미화 · 조계원 · 양부남
윤준병 · 이춘석 · 문대림
허성무 · 이재강 · 이기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
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,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</u>

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